

제1장 총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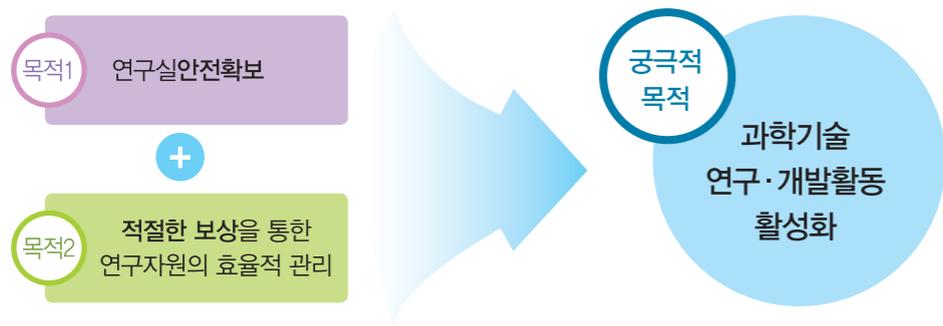
1 법률 제1조(목적)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이 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에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목적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목적1),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수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목적2),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궁극적 목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연구환경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림 1 연구실안전법의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안전법에서 <과학기술분야>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²⁾ 기준에 따른다. 현행 교육통계를 위한 전공분류는 모두 7개의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1.인문계열, 2.사회계열, 3.교육계열, 4.공학계열, 5.자연계열, 6.의약계열, 7.예체능계열이다. 이 중 연구실안전법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는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의 모든 학과와 교육계열 중 공학교육과 자연계교육, 교육일반 및 초등교육학 중 공학교육, 과학교육, 컴퓨터교육, 실과교육 등으로 분류되는 전공학과에 해당하는 분야로 규정한다. 공학계열은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등이 있다. 자연계열에는 이학, 가정학, 농림학, 수산해양학 등을 포함하며, 관련 학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전공분류 중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육계열(03)	교육일반(01)	교육학	공학계열(04)	산업(09)	산업공학	
	유아교육(02)	유아교육		화공(10)	화학공학	
	특수교육(03)	특수교육		기타(11)	기전공학	
	초등교육(04)	초등교육학	응용공학			
	중등교육(05)	공학교육	교양공학	자연계열(05)	농림·수산(01)	농업학
자연계교육		건축·설비공학	수산학			
건축(01)	건축학	조경학	생물·화학·환경(02)		산림·원예학	
	토목·도시(02)	토목공학			생명과학	
	도시공학	동물·수의학				
교통·운송(03)	지상교통공학	화학			생활과학(03)	자원학
	항공학	환경학		가정관리학		
	해양공학	식품영양학				
기계·금속(04)	기계공학	금속공학	수학·물리·천문·지리(04)	의류·의상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교양생활과학		
	전기·전자(05)	전자공학		수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정밀·에너지(06)	광학공학	광학공학		의료(01)	물리·과학	
	에너지공학	에너지공학			물리·기상학	
소재·재료(07)	반도체·세라믹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간호(02)		지구·지리학	
	섬유공학	섬유공학			교양자연과학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			의약계열(06)	의학
	재료공학	재료공학				치의학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		한의학		
재료공학	재료공학	간호(02)		간호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약학(03)	약학		
컴퓨터·통신(08)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치료·보건(04)	보건학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재활학		
				의료공학		

2)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2-2110-2784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별표 2] <개정 2016. 12. 30.>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훈련	근로자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기 교육·훈련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 교육 · 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 ·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 ·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호의 정기 교육 ·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